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교육부로 이체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6. 00. 공포 ·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8조제2항 중 “인구아동정책관·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으로 하며, 인구아동정책관·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을 “인구아동정책관 및 노인정책관으로 하며, 인구아동정책관 및 노인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구정책총괄과, 출산정책과,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자립과, 아동학대대응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노인건강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및 청년정책팀”을 “인구정책총괄과, 출산정책과,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자립과, 아동학대대응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노인건강과 및 청년정책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870”을 “836”으로 하고, 별정직 계 “6”을 “5”로 하며,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860”을 “82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5”를 “24”로 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9”를 “18”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9”를 “57”로 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8”을 “55”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

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91”을 “280”으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3”을 “91”로 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 또는 전산주사 “3”을 “2”로 하고,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9”를 “64”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32”를 “28”로 하고, 행정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8”을 “7”로 하며, 행정서기 “35”를 “34”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4”를 “3”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72”를 “838”로 하고, 별정직 계 “6”을 “5”로 하며,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862”를 “82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5”를 “24”로 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9”를 “18”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9”를 “57”로 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8”을 “55”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91”을 “280”으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3”을 “91”로 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 또는 전산주사 “3”을 “2”로 하고,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9”를 “64”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32”를 “28”로 하고, 행정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8”을 “7”로 하며, 행정서기 “35”를 “34”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4”를 “3”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81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인구정책실) ① (생 략)	제8조(인구정책실) ① (현행과 같 음)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 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은 <u>인구아동정책관·노인정책</u> <u>관 및 보육정책관</u> 으로 하며, 인 <u>구아동정책관·노인정책관</u> 및 <u>보육정책관</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 급으로 한다.	② ----- ----- ----- -- <u>인구아동정책관 및 노인정</u> <u>책관</u> 으로 하며, <u>인구아동정책관</u> <u>및 노인정책관</u> -----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보육정책관은 「보건복지부</u> <u>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u> <u>제3항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u> <u>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u> <u>다.</u>	<삭 제>
⑥ 인구정책실에 <u>인구정책총괄</u> <u>과, 출산정책과, 아동정책과, 아</u> <u>동보호자립과, 아동학대대응과,</u> <u>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u> <u>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u> <u>노인건강과, 보육정책과, 보육</u>	⑥ ----- <u>인구정책총괄</u> <u>과, 출산정책과, 아동정책과, 아</u> <u>동보호자립과, 아동학대대응과,</u> <u>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u> <u>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u> <u>노인건강과 및 청년정책팀</u> ----

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및 청
년정책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
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
기관 · 서기관 · 보건사무관 · 약
무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행
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⑩ (생략)

⑪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원 정
책 협의 · 조정 · 총괄
2. 영유아 정책에 대한 조사 ·
연구 · 평가 및 제도개선
3. 영유아 정책에 관한 종합계
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
획의 총괄
4.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5.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 · 운영
6.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7. 보육예산의 편성 · 집행관리
및 정산 · 결산
8.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보

-----.

⑪ ~ ⑫ (현행과 같음)

<삭 제>

육전자바우처)의 운영 및 관리

9. 보육행정 전산화

10.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교육

11.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 · 감독

12. 영유아 및 영유아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

13. 보육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 활성화의 지원

14. 보육통계의 생산 및 관리

15. 어린이집연합회 등 법인 · 단체의 지도 · 감독

16.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17.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교육 훈련의 지원

18. 보육교직원의 경력 및 자격 관리

1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 인가 기준의 수립 및 관리

20.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21.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2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
및 운영·관리

⑱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

2.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3.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및 부모 지원 보육서
비스의 개발

5. 영아·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
자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
자 소득기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8. 부모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에 관한 사항

9.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인건비
지원

10. 맞춤형 보육 자격기준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11.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2. 보육지원체계 기획·연구 및 일시보육 지원

⑬ 보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지 원

2.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3.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4.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5.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6. 보육아동의 건강 · 영양 · 안전 등의 관리

7. 어린이집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9. 협동어린이집의 활성화

10. 시간연장형, 종일형, 방과후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②② (생략)

<삭 제>

②①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70</u>	<u>836</u>	-34
·	·	·	
·	·	·	
별정직 계	<u>6</u>	<u>5</u>	-1
·	·	·	
·	·	·	
<u>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u>	<u>1</u>	<u><삭 제></u>	-1
·	·	·	
일반직 계	<u>860</u>	<u>827</u>	-33
고위공무원단	<u>25</u>	<u>24</u>	-1
·	·	·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9</u>	<u>18</u>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59</u>	<u>57</u>	-2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8</u>	<u>55</u>	-3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 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 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91</u>	<u>280</u>	-11
·	·	·	
·	·	·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u>93</u>	<u>91</u>	-2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또는 전산주사	<u>3</u>	<u>2</u>	-1
·	·	·	
·	·	·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 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 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u>69</u>	<u>64</u>	-5
·	·	·	
·	·	·	

행정주사보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u>32</u>	<u>28</u>	-4
·		·	·	
·		·	·	
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 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u>8</u>	<u>7</u>	-1
·		·	·	
행정서기		<u>35</u>	<u>34</u>	-1
·		·	·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u>4</u>	<u>3</u>	-1
·		·	·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72</u>	<u>838</u>	-34
•	•	•	
•	•	•	
별정직 계	<u>6</u>	<u>5</u>	-1
•	•	•	
•	•	•	
<u>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u>	<u>1</u>	<u><삭 제></u>	-1
•	•	•	
일반직 계	<u>862</u>	<u>829</u>	-33
고위공무원단	<u>25</u>	<u>24</u>	-1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9</u>	<u>18</u>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59</u>	<u>57</u>	-2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8</u>	<u>55</u>	-3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 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 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91</u>	<u>280</u>	-11
·	·	·	
·	·	·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u>93</u>	<u>91</u>	-2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또는 전산주사	<u>3</u>	<u>2</u>	-1
·	·	·	
·	·	·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 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 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u>69</u>	<u>64</u>	-5
·	·	·	
·	·	·	

행정주사보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u>32</u>	<u>28</u>	-4
.		.	.	
.		.	.	
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 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u>8</u>	<u>7</u>	-1
.		.	.	
행정서기		<u>35</u>	<u>34</u>	-1
.		.	.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u>4</u>	<u>3</u>	-1
.		.	.	
.		.	.	